

의안번호	2204428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계번호	24D4143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, 국가가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~2026년까지 58억 8,100만원(연평균 29억 4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5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합계	연평균
합계	3,061	2,820	5,881	2,941
－ 국가	918	846	1,764	882
－ 평택시	2,143	1,974	4,117	2,05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3 (현충시설 건립 보조금 지급의 특례)	국가는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. 이 경우 평택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전에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9조의3 (현충시설 건립 보조금 지급의 특례)	○	－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사업비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, 공사비, 보상비, 용역비 등¹⁾,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「현충시설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²⁾ 및 「현충시설 관리지침」 제14조³⁾에 근거하여, 국가보훈부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민간단체에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0%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, 동 사업의 사업비는 평택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
 - 추계에서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,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0%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에서는 평택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⁴⁾을 적용하여 산정

-
- 1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[별표2]는 현충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,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4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(이하 "사업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,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- 2) 「현충시설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(현충시설의 건립지원)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1. 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
 2. 국가유공자의 훈격(勳格)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
 3. 현충시설의 대표성,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
 4. 사업주체의 능력(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)
 5.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
- 3) 「현충시설 관리지침」 제14조(예산요구) 보훈문화정책관은 현충시설 건립지원예산 및 개·보수지원예산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1.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경우 : 사업비 전액. 다만, 국민성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금모금 예정액을 차감한 금액
 2. 삭제 <2018. 3. 7.>
 3. 제12조에 따른 건립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사업: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
 4. 제13조에 따른 개·보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: 개·보수 소요경비 중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
- 4)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

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최근5년 연평균 상승률
건설공사비지수	107.05	112.03	116.49	118.87	132.31	146.47	151.94	-
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(%)	5.03	4.64	3.99	2.04	11.30	10.70	3.74	6.87

-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사업 부지는 평택시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으로
부지매입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-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
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법안 심사기간, 현충시설 건립기간 등을
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~2026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현충시설 건립사업 지원

- 평택시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,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사
업은 3,700㎡ 규모 부지에 추모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,
2025년 기준 총사업비는 59억원(부지 공시지가 3억원 포함)임

[표 2]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사업 개요

구분	내용
사업기간	2025~2026년
사업규모	내리문화공원(평택시 팽성읍 내리 260 / 3,700㎡)
사업내용	추모시설 및 공원조성
총사업비	59억원(부지 공시지가 3억원 포함)

자료: 평택시

- (공사비)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은 조형물, 명비, 조경공사 등으
로 구성되어 있고,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평택시가 제출한 내역을 적
용하여, 2024년 기준 52억 1,000만원에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⁵⁾을 적
용하여 산정

5)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

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최근5년 연평균 상승률
건설공사비지수	107.05	112.03	116.49	118.87	132.31	146.47	151.94	-
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(%)	5.03	4.64	3.99	2.04	11.30	10.70	3.74	6.87

[표 3] 평택시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사업 총사업비 세부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주 요 사 업 내 용	사업비
공사비	추모시설비	- 추모시설 - 벽면부조(조각 등) 또는 조형물(동상 등) = 300백만원 - 명비 : 약36,000명 x 27,000원/명 = 1,000백만원 - 명비 재료비 및 설치비, 운반비 = 3,000백만원	4,300
	기반공사비	철거, 토공, 우수, 보수정비, 조명공사 등 = 350백만원	350
	조경공사비	- 식재 = 250백만원 - 포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 = 310백만원	560
합계			5,210

자료: 평택시

- (설계비)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⁶⁾⁷⁾을 곱하여 산출
 - 건축설계는 건축공사 첫 해인 2025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연도별 건축공사비에 직선보간 산정식⁸⁾에 따라 산출된 설계비 요율을 적용
- (감리비 및 시설부대비)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에 따라 산출된 건축감리 대가요율⁹⁾ 및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(0.23)을 곱하여 산출
 - 설계비는 첫해인 2025년에 집행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개 연도(2025~2026년)에 걸쳐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

6)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635호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 [별표 4]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따르면, 공사비 50억원 및 10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

(단위: %)

	제3종(복잡)			제2종(보통)			제1종(단순)		
	상급	중급	기본	상급	중급	기본	상급	중급	기본
50억원	5.72	4.76	3.81	5.20	4.33	3.46	4.68	3.90	3.12
100억원	5.58	4.65	3.72	5.07	4.22	3.38	4.56	3.80	3.04

자료: 국토교통부

7) 종별 구분을 3종(복잡)으로 적용하였고, 설계도서량 구분은 중급으로 적용

8) 직선보간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

$$\text{요율}(\%) = Y_1 - \{(\text{당해 공사비} - X_1) \times (Y_1 - Y_2) / (X_2 - X_1)\}$$

(X₁: 작은 금액, X₂: 큰 금액, Y₁: 작은 금액 요율, Y₂: 큰 금액 요율)

9)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635호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 [별표 5] 건축감리 대가요율에 따르면, 공사비 50억원 및 10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

(단위: %)

	제3종(복잡)			제2종(보통)			제1종(단순)		
	상급	중급	기본	상급	중급	기본	상급	중급	기본
50억원		1.18			1.07			0.96	
100억원		1.14			1.04			0.94	

자료: 국토교통부

[표 4]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사업비 추정: 2025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합계
공사비	2,784	2,784	5,568
설계비	241	0	241
감리비	30	30	60
부대시설비	6	6	13
합계	3,061	2,820	5,88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, 국가가 평택시의 현충시설 건립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~2026년까지 58억 8,100만원(연평균 29억 4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5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합계	연평균
합계	3,061	2,820	5,881	2,941
－ 국가	918	846	1,764	882
－ 평택시	2,143	1,974	4,117	2,05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평택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로, 사업계획 변경시 추가재정소요는 상이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